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23일, 박범계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5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9. 22.)

제15차 전체회의(2025.11.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범계의원)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면서 헌법재판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신분은 판사·검사와 동일한 특정직공무원임.

헌법연구관은 판사·검사와 같이 변호사 자격자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외에도, 외국의 입법과 판례를 조사하여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등 헌법재판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대학교수 등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력자 등도 헌법연구관의 자격요건에 포함하고 있음.

업무성격(연구업무)이 유사한 국·공립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이며, 신분과 자격요건에서 유사한 판사의 정년은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된 반면,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2003년도에 정년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60세로 변동이 없는 상태임.

한편, 매년 접수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심판사건의 난이성·비정형성 등의 심화로 헌법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헌법연구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함.

그러나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에 불과하다보니 정년이 상대적으로 긴 국공립대학 교수 및 판사로의 이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이직한 16명의 헌법연구관 중 12명이

대학교수(6명) 및 판사(6명)로 이직하였음.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연구 인력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19조제7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였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